

##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(추가)

2018년 7월 1일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현 행	관 련 법조문	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
법인택시 구인활동	<p><b>【 내 용 】</b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대 상 : 일반택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사항</p> <p>○ 운송사업자는 교통회관,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정정밀검사장(성산동, 하계동) 부지 및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신규택시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구인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활동은 예외로 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위반시 조치</p> <p>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</p> <p>○ 동법시행령 (별표3)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(별표5)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</p>	법 제23조	○ 운송사업자 - 과징금 120만원 또는 - 사업일부정지 · 1차 : 20일 · 2차 : 40일 · 3차 : 60일

※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개별송달 기 시행